

현장방문 활동 계획안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'97. 8. 28

제안자 : 이수택 의원의 6

1. 제안 이유

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장과 다대쓰레기 소각장및 사하구 재활용품 선별장등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실태파악으로 민원해소와 쓰레기 처리 대책 방안등을 강구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○ 현장방문 개요

일 시	대 상 지	소 관 안내부서	방 문 자	비 고
'97. 9. 6 (토) 10 : 30	·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사업장 · 구평동 택지개발사업장	건 설 과 도시개발과	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의 위원 15	
'97. 9. 8 (월) 10 : 30	· 사하구 재활용품 선별장 · 다대쓰레기소각장 · 낙동강 물양장 · 다대동1521-1번지 택시기사 휴게소 신축사업장	청소행정과 · 지역경제과 건 축 과	“	

3. 참고 사항

- 해 당 과 : 현장 설명자료 제출('97. 9. 2한) 및 안내
- 재무담당관실 : 현장활동기간 25인승 미니버스 지원 협조
- 수행공무원 :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 한 돈, 직원 이대회

낙동강 물양장 현황

□ 물양장 현황

재산의 표시			접안선길이	소유자	관리자
위치	면적	지목			
다대1동 1525-1	3,003.7m' (908평)	잡종지	80m×37m	부산광역시	사하구청장

□ 물양장 인수과정

- '91. 7.20 : 하구둑 건설시 토석반출장으로 조성후 공사완료와 동시
부산시에서 인수 (수자원공사 → 부산광역시)
- '91. 9.19 : 어항시설관리 내부위임 (부산광역시 → 사하구청장)
- '92. 1. 6 : 물양장 토지신규등록 (소유자 : 부산광역시)
- '92. 1.22 :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(소유자 : 부산광역시)
- ※ 재산관리 위임시 용도지정 : 어항시설 (물양장)

□ 물양장 관리

- 낙동강 물양장은 어항법 및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현재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며
-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항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목적에 한하여 구청장이 점용허가하고 있음.
- ※ 어항법시행령 제27조(어항시설의 공익목적의 사용 또는 점용범위)
법 제2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이 정하는 공익목적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.
 1.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
 2. 어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3. 기타 관리청이 주민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물양장 허가내역

피 허가자	허가기간	사용목적
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-206 신강토건(주) 대표이사 고한운 ※물양장사용 협조공문 '92.9.24 수산청→부산광역시 '92.9.25 부산광역시→사하구	▶92.10.22-92.12.31 ▶93. 2.17-93.12.20 ▶93.12.30-94. 2.20	감천항 원양어선 전용부두 축조용 매립토 및 기초 사석의 해양운반
부산시수협 흥티어촌계 계장 박용웅	▶95. 6.14-95. 8.31 ▶95.12. 1-96. 4.30 ▶96. 5. 7-96. 9.20 ▶97. 5. 3-98. 5. 2	○어선항로 준설에 따른 사토의 일시적채 및 운송 어선항로공사에 따른 준설선 및 예인선 접안 ○해태어구적치, 어구수리 작업장 및 준설장비선접안
부산광역시장 (위생처리 관리소)	▶96. 6. 6-96. 6.25	분뇨관 및 침출수관 하구둑 설치공사용 트러스트교체 조립 및 운반
부산광역시장 (수산행정과)	▶97. 1.21-97. 2.20	강서구 천가동 대항항 방파제 축조공사용 자재운반

□ 행정지도 및 조치사항

- 낙동강물량장 허가목적(어구적치 및 준설장비선 접안)대로 사용토록 계도 ('97.5.27)
- 어항시설 사용허가 목적외 사용(준설토 야적)에 따른 원상복구 지시 ('97.8.4, '97.8.12)
 - ▷ 준설토 야적 및 작업장비(포크레인) 1대, 컨테이너 2동 무단 점유
- 어항시설 허가목적외 사용에 따른 행정처분(허가취소)코자 출석통보 ('97.8.25, '97.9.2) ⇒ 출석기한 '97.9.11
 - ※ 문화재보호법위반 (문화재보호구역내 준설토 무단야적)으로
 - ▶ 문화공보담당관실 → 사하경찰서 고발 ('97.8.27)

□ 물양장 무단사용에 따른 조치

무단사용자	무단점용기간	조치사항
부산시 남구 남천동 비치(아) 106-1005 신아선박 대표 김봉갑	▶ 95.11.7-11.15 (9일간) ▶ 사용면적 800㎡	▷ 95.11.16 사유재산 무단점용 사용료 징수조치 (₩853,240원) ▷ 산출근거 → 야적: $257,000(\text{인접토지㎡당공시지가}) \times 800\text{㎡}(\text{사용면적}) \times 0.1(\text{어항시설의가액}) \times 0.083(1/2\text{사용월수}) \times 0.5(\text{무단사용변상금}1/2) = ₩853,240\text{원}$
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7-8 원진산업개발 대표 김형탁	▶ 95.10.17-10.31 (5일간) ▶ 사용면적 50㎡	▷ 96.11.11 사유재산 무단점용 사용료 징수조치 (₩146,110원) ▷ 산출근거 → 야적: $266,000(\text{인접토지㎡당공시지가}) \times 50\text{㎡}(\text{사용면적}) \times 50/1000(\text{어항시설의가액}) \times 15/365(\text{어항사용일수}) \times 120/100(\text{무단사용변상금}) = ₩32,718\text{원}$ → 접안: $108\text{톤}(\text{선박톤수}) \times 1/10(10\text{톤당부과기준}) \times 700\text{원}(\text{기본사용료}) \times 15(\text{사용일수}) = ₩113,400\text{원}$

※ 부산광역시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(부산광역시조례 제3253호 '95.11.29)

※ 낙동강물양장에 어항시설 안내판 제작 설치 ('95.11.20)

다대 쓰레기 소각장 현황

□ 현 황

위 치	시 설 규 모		처리규모	운영방법	부대시설	가동일
	부지(m ²)	건물(m ²)				
다대동154-5 (다대5지구내)	11,051	6,302 지하 2층 지상 6층	200톤/일(1기)	환경관리공단 위탁운영	실내수영장	95.9.16

□ 기구 및 인력

- 3과 41명(소장 1, 서무과 9, 운전과 22, 정비과 9)

□ 운영 및 주요설비

- 소각로 가동 : 년중 335일가동(정비기간 30일제외)
- 기 종 : 화격자식(건조 → 연소 → 후연소)
- 중앙제어설비 : 분산제어시스템(DCS)에 의한 자동제어
- 배출가스자동감시 설비 : TMS(배출가스의 원격자동감시 시스템)
- 반입차량 쓰레기 무인자동계근

□ 폐기물 반입수수료

- 근 거 :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등에
 관한 조례9조
- 반입수수료 : 다대소각장 50%감면
 - 생곡매립장 : 톤당 8,000원(주민지원기금 1,000원, 시설지원기금 7,000원)
 - 다대소각장 : 톤당 4,000원(주민지원기금 1,000원, 시설지원기금 3,000원)
- '97 예 산 : 400,556천원('97. 1월 지급액 24,634천원)
 - 생 곡 3,698천원(462 × 8,000원)
 - 다 대 20,936천원(5,234 × 4,000원)

구직영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

위 치 : 하단2동 산11-1번지

면 적 : 7,144m²(2,155평)

사용면적 : 1,650m²(500평)

○ 인력현황

계	감 독	소각장	압축기	선별장	경 비	사 고
21	1	4	2	10	2	2

○ 건물현황 - 경량철골조

계	선 별 장	음식물쓰레기 교 반 장	소 각 장	관 리 소	샤 위 실	계량시설
673.28m ² (203.7평)	304m ² (92평)	92.8m ² (28평)	192m ² (58.1평)	38.88m ² (11.8평)	15.6m ² (4.7평)	30m ² (9.1평)

※ PET.캔 압축처리장 신축 - 97. 10월 완공예정

○ 구조 :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(25평)

○ 예산 : 80,000천원(설계비 2,300천원, 공사비 77,700천원)

- 시비 50%, 구비 50%

○ 장비현황

계	소각로	캔 선별기	계량대	냉 매 회수기	용융기	전 동 지게차	압축기	교반기
11	3	1	1	1	1	1	2	1

구평 택지개발 사업장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	사업명칭	면적(m ²)	수용인구및주택호수		사업기간	사업시행자
			수용인구	주택호수		
구평동 봉화산일원	부산구평지구 택지개발사업	223,665 (67,666평)	10,634인	2,874호	96. 8. 8~ 99.12.31	대한주택공사

□ 추진경위

- 95. 2. 1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(건설교통부장관)
- 96. 8. 8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(부산광역시장)
- 96. 12. 10 실시계획 승인(부산광역시장)
- 97. 2. 1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(부산광역시장)

□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석무대 반출계획

- 목 적 : 토석무대 반출로 대지조성 공사비 및 주택 건설원가 절감
- 토석무대반출 예상량 : 220만m³
- 시공업체 : (주)석원건설 대표이사 김중환 (주)정도건설 대표이사 이상욱
- 토석채취에 따른 각종 인.허가 절차 이행 완료
 - 97. 7. 22 : 골재채취허가(구 건설과)
 - 97. 7. 25 :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(구 환경보호과)
 - 97. 8. 11 : 지장입목벌채 및 이식 승인(구 지역경제과)
 - 97. 8. 7 : 화약류 사용허가(사하경찰서장)

□ 민원 해결방안

- 시공업체에서 주민설명회 2회 개최(8월 26일, 8월 28일)
- 공사로 인한 소음, 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시설 및 방음벽 설치 작업중

감천항배후도로개설공사(2차)

<요 지>

“감천항 배후도로 개설공사(2차)”구간내인 부두계량사~전원빌라 입구간 보도 설치에 따른 인접 주민 의견차이로 인한 민원발생사항 임.

1. 공사규모

- 공 사 명 : 감천항 배후도로개설공사(2차)
- 개 요 : 도로개설 L=1,080m, B=35m
- 공 사 비 : 12,471백만원(공사 : 1,382 감리 : 1,089)
- 기 간 : 94. 8. 26 ~ 97. 12
- 시 공 자 : (주)대백종합건설
- 감 리 사 : (주)도화종합기술공사

2. 보도설치 계획내용 - 별도 도면참조

3. 민원요지

- 제1민원 : 감천항 배후도로에서 전원빌라 진입을 위한 감속차선을 30m만 띄우고 보도를 설치하되 감천항 배후도로상에 설치요망.
- 제2민원 : 전원빌라 진입을 위한 감속차선을 현 설계된 대로 띄우고 전원빌라 진입을 위한 계획도로상에 설치요망.

4. 민원발생 및 추진사항

- 추진경위

97. 9. 6현재

순번	문서번호	제 목	내 용	비 고
1	97. 5. 25~ 97. 6. 1		· 경계석 설치 준비작업 및 터파기, 보조기를 포설	
2	97. 6. 3	민원발생	· 민원인의 요구로 인도를 설치하지않고 배수고려하여 시공토록 협의	
3	건설(97. 7. 7) 58000-2780호	진정서 제출에 따른조사 및 해결방안검토지시	· 인도주변 주민들이 공장 및 전원빌라 APT진입차량의 원활한 통행가능토록 인도제거 요청에 따른 해결방안제시	진정인:감천1동 주민19명
4	감배감97-22호 (97. 7. 9)	오복간장앞 (ST.A.NO.81(L) 부근 민원협의 결과보고	· 오복간장앞 부근 민원발생(97.6.3)으로 보류한 인도부를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토록 양쪽 민원인 협의내용 대로 보도 설치	

순번	문서번호	제 목	내 용	비 고
5	건설(97. 7.12) 58700-2975호	공사시행지시	· 민원인과 협의된(안)대로 조속히 시공 토록 지시 ·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부산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	
6	감배감97-30호 (97. 7. 19)	오복간장앞 (STA.NO.81(L)) 부근보도설치 실정보고	· 협의된(안)에 대하여 재민원 제기	
7	97. 7. 22접수	건의서	· 전원빌라 주민 민원제기 건물에 인접 하여 인도설치 요망	건의자 : -전원빌라주민80명 -오복식품
8	감배감97-33호 (97. 7. 24)	오복간장앞 (STA.NO.81(L)) 부근 민원재협의 결과보고	· 전원빌라 집입로 6M 계획도로의 미보 상에 대하여 보상 또는 기공 승낙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인도설치 · 미보상 또는 기공 승낙 불가시 경계 측량후 시공 가능 부분에 인도 시공	
9	건설(97. 7. 26) 58700-3186호	민원발생에 따른 시공동의서 징구지시	· 계획도로내에 저촉되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공동의서 징구요구 · 협의 완료시까지 공사를 순연지시	
10	97. 7. 30접수	감천항배후도로의 전원빌라진입로 개설에 대한 질의서	· 실무협의시 도출된 사항이 예산조달 방안으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? · 고가도로 진입로 BOX를 20M축소한 것에 대한 타당성 설명	전원빌라위원장 김상만의 임원단일동
11	감배감97-40호 (97. 8. 4)	질의서 제출에 따른 검토지시건	· 부득이한 경우 종단구배가 13%까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	
12	감배감97-45호 (97. 8. 10)	민원발생에 따른시공동의서 징구협의결과 보고	· 오복식품(감천 771-3) : 선보상 · 화력발전소(감천 750-8) : 선보상, 법원 가처분 상태 · 김환(감천 771-1) : 오복식품, 한전 동의서 동의	
13	건설(97. 8. 13) 58700-3416호	시공동의서 제출에따른협의	· 시공동의서 제출 소유자와 협의	
14	감배감97-49호 (97. 8. 27)	민원발생일지	· 오복식품(감천771-3) : 선보상, 보상액 편입부지 <확정 공문 요구> · 한전 화력발전소(감천750-8) : 법원 가처분상태 · 김환(감천771-1) : 보상시기 확정요구	

5. 대 책

- 전원빌라APT 주민은 B=6m의 전구간 도로 개설중에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사유토지(3필)시공승락서 징구시 공사시행하고 추후 예산편성시 긴급반영요구
- 시공동의가 되지 않을시는 현 설계대로 시공
- 보도설치는 시공동의 결과에 따라 주민(이해 관련인)과 재협의 및 교통운영 계획 수립에 따라 보도설치.